

입 법 정 보

- ◆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및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입법예고)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 I. 법령 제정·개정 동향 1
 -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2
 -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5
 -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6
 - 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6
 - 5.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7
 - 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8
 - 7.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8
 - 8.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9
- 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0
 - 1.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11
 - 2. 충청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12
 - 3.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13
-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법제처) 14
 - 1.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회의참석 수당 관련 (부산 강서).....15
 - 2.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 대행 관련 (강원 삼척).....19
 - 3. 세부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 경과조치 관련 (충남 서산).....22

I 법령 제정 · 개정 동향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1 [제정 `23. 2. 14. 시행 `24. 2. 15.]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1368

■ 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며, 정부가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등이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근무환경 개선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등 농어업고용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등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은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과 시·군·구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각각 5년마다 수립해야 함(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별·업종별·품목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함(제8조).

라.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을 결정할 경우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의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해야 하고,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양해각서 체결 업무,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교육·체류·출국관리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10조).

마.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은 관할구역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2조).

바. 국가 등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제13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어업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제14조).

아. 정부는 여러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고용인력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공동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농어업고용인력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함(제15조 및 제16조).

자. 정부는 우수 근로환경 제공 농어업경영체를 발굴·홍보하는 등 인식 개선사업을 실시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에 장기근속한 숙련인력 등 우수한 농어업고용인력을 선정하여 장려금의 지급, 농어업 분야 창업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제17조 및 제18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 11. 15. 시행 '23. 2. 16.]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버스정책과), 044-201-3826

■ 개정이유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중교통 관리 및 예방대책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대중교통의 방역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따라 대중교통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포함시킴(제5조제2항제13호 신설).
- 나.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정의 및 추진 근거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광역교통요금 정책 및 교통카드 데이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12 및 제23조제2항 신설)
- 다. 대중교통이용자가 추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개인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2조의2 신설).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 11. 15. 시행 '23. 2. 16.]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4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절차를 폐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보고” 하는 대신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 '23. 2. 21. 시행 '23. 2. 21.]

소관부서 : 해양수산부(환경산업경제과), 044-201-671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개선부담금의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5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2. 11. 15. 시행 `23. 2. 16.]

소관부서 :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044-200-577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통선(通船)을 이용하는 항만용역업의 사업 내용을 통선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 중 알루미늄선인 통선의 선령(船齡)기준을 25년 이하로 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통선마다 여객의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운송관련사업: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함.

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3. 2. 24. 시행 `23. 2. 24.]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044-202-280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수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에 그 대상자를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및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로서 실무수습 중인 사람으로 정하려는 것임.

7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23. 2. 10. 시행 `23. 2. 10.]

소관부서 : 소방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044-205-824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소방본부장·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시·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8 [제정 `23. 2. 16. 시행 `23. 2. 16.]

소관부서 :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 044-203-3218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되었으나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이 요구되므로, 그동안 운영되어 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이 영을 상시적 규정으로 전환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의결일 '23. 1. 31.]

제정이유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제2조)
- 나.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 (안 제5조)
- 다.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사업을 규정 (안 제6조)
- 라. 청년예술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8조~제10조)

2

충청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결일 '23. 1. 17.]

제정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소방설비등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 가.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의 범위 (안 제4조 및 안 별표)
- 나. 지원대상 및 비용지원의 근거 (안 제5조~제6조)
- 다. 지원신청 방법·절차 및 심의결과의 통지 (안 제7조)
- 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안 제8조)
-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 제9조)
- 바. 우선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안 제10조)
- 사. 지원의 방법, 비용 정산 및 환수조치 (안 제11조~제13조)

3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

[의결일 '23. 1. 19.]



제정이유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의 생활안정 및 권익 증진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안 제1조~제3조)
- 나.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계획을 규정 (안 제4조)
-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 라. 영주귀국주민의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
- 마. 행사를 추진하는 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9조)
- 바.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 (안 제10조)

Ⅲ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법제처]

1 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 관련)

[의견23-0040] 부산광역시 강서구

질 의 요 지 및 의 견

질 의 요 지

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의 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새마을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제2호), 지역개발과 자연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제4호)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의 공익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강서구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서구의 소관 사무와 관련되는 경우라도 질의 요지와 같이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마을조직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제3조제1항)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비 지원의 근거 규정이므로,

조직의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급의 법률상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거나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설치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새마을운동조직이 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라는 점, 새마을조직법 제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제2호에서는 강서구청장이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개개인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이 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삼척시장이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및 「삼척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의견23-0028] 강원도 삼척시

■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삼척시장이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및 「삼척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의견

삼척시장이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및 「삼척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또는 하수도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삼척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운영 조례」(이하 “삼척시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는 공공하수도시설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대행업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시장이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및 삼척시조례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업무의 대행”이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

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를 원(原) 권한자인 행정기관으로 하고 책임도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대행에 따른 법령상 권한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고 대행기관이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 명의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법률적 효과는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직접 행사(行使)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권한을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법적으로 이전하여 행정권한을 수탁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이름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정권 행사의 법적 효과 또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민간위탁”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행과 위탁을 구분하고 있는 점, 민간위탁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장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민간위탁조례 제5조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법적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삼척시장이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및 삼척시조례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민간위탁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조례에 세부 허가기준이 신설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별크로리의 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조례에 규정된 세부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해당 조례의 부칙에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관련)

[의견23-0336] 충청남도 서산시

■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조례에 세부 허가기준이 신설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별크로리의 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조례에 규정된 세부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해당 조례의 부칙에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0호에서는 허가받은 사항 중 벌크로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제3항의 위임을 받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시설 및 배치기준 등 세부 허가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서산시조례”라 한다)가 2020. 1. 3. 제정·시행되었고, 서산시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본문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면서, 저장시설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을 변경하거나 장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는 기 제정된 서산시조례의 부칙에 벌크로리의 수량을 증가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까지도 서산시조례 별표에서 규정한 허가 지역이나 시설 및 배치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 조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칙의 개정 사항 없이 부칙 그 자체로서 제·개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예외적으로 종전 부칙에 오류가 있거나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도입한 제도의 시행을 원래 부칙에서 예정했던 것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본칙의 개정 없이 부칙만을 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9. 4. 11. 회신 의견 19-0110 참조).

또한, 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가 아닌 한 그 개정 시 종전 법령 부칙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종전 법령의 부칙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자치법규의 입법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서산시조례의 부칙은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실효되지 아니한 서산시조례의 부칙에 해당 조례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자가 벌크로리의 수량을 증가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산시조례에서 정한 세부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서산시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입법취지와도 조화를 이루는 가장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면 해당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2020. 1. 3.에 제정·시행된 서산시조례의 부칙을 시행 후 개정하여 소급적용하는 경우에 그 내용은 「행정기본법」 제9조에 따른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거나 서산시조례 부칙이 신설될 당시 입법 취지 등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인바, 서산시조례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는 신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와 달리 서산시조례의 세부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에 형평성 훼손의 문제가 없는지와 서산시조례 부칙 제2조 단서에서 서산시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시설 노후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 설비의 증설이 없는 제한적인 상황만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불 때 액화석유가스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인 별크로리의 수량 증가의 경우에까지 서산시조례의 적용 예외로 두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